



주사제 알레르기 설명의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당 법무법인은 주사제 알레르기에 대한 진단을 잘못 받아 이후 제왕절개 출산시 진통제를 투약받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환자가 알레르기 검사를 한 A병원과 A병원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가소365986 판결)을 제기한 사건에서 A병원 원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7. 1. 2. 감기 몸살 기운을 이유로 A병원에 내원하였다. A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 해열 진통제인 케토신과 트리마돌을 주사하였다. 주사액이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부의 붉어짐과 목 안쪽이 가렵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A병원 의사는 NSAID allergy(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알레르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과 추후 확실한 원인을 알기 전까지 위 약물을 투여 받을 때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4. 제왕절개로 출산하게 되었는데, A병원의 진단을 이유로 NSAID allergy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진통제는 투약하지 않은 채 제왕절개하여 분만하였다.

원고는 피고병원의 잘못된 진단과 고지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모든 진료에서 NSAID allergy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진통제를 투약받지 못했으며, 의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소한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가 NSAID allergy가 아님에도 정확한 검사나 확인 없이 선불리 NSAID allergy라고 진단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서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문의료인으로서 NSAID allergy를 일으킬 수 있는 NSAID가 굉장히 광범위한 약물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NSAID allergy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하여 제대로 확인 후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병원 및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어떤 약물을 투여 받은 후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약물로 확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약물 투약 당시 전반적인 상태, 면역 기능 등에 따라 일시적인 반응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진료시 주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A병원 의사는 NSAID allergy를 확진한 것이 아닌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사로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을 들은 환자는 이에 대한 확진검사를 받거나 이후 진료시 이러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진료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타 병원 의료진에게 고지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선택일 뿐 피고들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하였다.

또한, 현 임상의학 수준에서 NSAID 성분의 진통제 이외에 다른 성분의 진통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 또한 출산시 마취하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자가 조절 진통제(PCA),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로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¹⁾’는 대법원 판례를 실제 사건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관련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LK PARTNERS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변호사/수익사

TEL. 02 565 9801

E-mail. smlee@lkpartner.co.kr